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고,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,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185호, 2024.2.6. 공포)됨에 따라,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(안 제1조의2)

법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.

나. 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(안 제1조의4 신설)

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, 연장

요청 절차 등을 정함.

다.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위원 추가(안 제2조)

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전단 중 “장에게”를 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장은”을 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보호 기간 등)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통일부 장관은 요청서를 제출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.

③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보호기간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. 다만,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법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, “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실장·국장급 공무원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실장·국장급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자료의 제출 요청 등) 통일부장관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<u>장에게</u>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<u>장은</u>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조의2(자료의 제출 요청 등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</u> -----. ----- ---- <u>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</u> -----. 제1조의4(보호 기간 등)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<u>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통일부 장관은 요청서를 제출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.</u> ③ <u>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보호기간이 종료됨을 서면으로</u>

제2조(협회의의 구성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(생략) 2. 협회의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<u>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실장·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</u>	<u>통지해야한다. 다만,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④ <u>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</u> 제2조(협회의의 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협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방자치단체의 실장·국장급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2